

충청북도소비자보호조례(안)

검 토 보 고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'97. 12. 3

나. 회부일자 : '97. 12. 3

3. 제안이유

- '96. 4. 1 소비자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·시행됨에 따라 우리도 실정에 맞는 소비자보호에 대한 법적근거, 절차를 명확히하여 소비자보호행정의 기반을 구축함과 동시에 건전하고 합리적인 지방소비환경을 조성하여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.

4. 주요골자

-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익보호를 위한 소비자의 기본적 권익, 소비자의 역할 및 도지사의 의무등을 명시(안제1조~제5조)
- 소비자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상의 안정을 위하여 위해물품의 제공금지, 위해물품의 회수 등 사업자의 의무규정을 정함 (안 제6조~8조)

- 불공정한 거래조건이나 방법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자에 대한 부당한 거래행위를 금지토록 함 (안 제9조~제10조)
- 소비생활의 합리화를 위하여 법령에서 정한 표시·광고·계량·규격 등의 준수여부를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함 (안 제11조~제14조)
- 소비자 교육 및 정보제공과 소비자 단체의 등록 및 육성·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 (안 제20조~제22조)
- 소비자보호 및 소비생활의 향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, 구성과 운영사항 등을 규정함 (제23조~제30조)
- 사업자가 조례에 반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거나 할 우려가 있는 경우 도지사는 문제의 영업활동에 관하여 조사하고,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게 함 (안 제31조~제33조)
-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(안 제34조)
- 그동안 운영해 오던 「충청북도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운영조례」는 본 조례에 통합하고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임 (부칙)

5. 검토의견

충청북도 소비자 보호 조례안을 검토한 바

이는 소비자의 기본권익을 보호하고 사업자의 의무를 규정함과 동시에 소비생활의 향상과 합리화를 기하기 위해 우리도 실정에 맞는 소비자 보호에 대한 법적근거 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

그 주요골자에 있어서는

첫째,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및 역할과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보호를 위한 도지사의 의무 등을 명시하고(안제1조~제5조)

둘째, 소비자 권리의 보장을 위한 사업자의 의무 및 부당거래의 금지를 명시하며 (안제6조~제10조)

셋째, 도지사에게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위해 표시·광고·계량·규격의 적정화를 위한 필요한 조사 및 조치를 할수 있도록 하고 (안제11조~제14조)

넷째, 소비자 피해의 구제를 위한 기구의 설치·운영·피해구제의 신중방법·처리·기준 등을 명시하며(안제15조~19조)

다섯째, 소비자 및 소비자 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(안제20조~제22조)

여섯째, 소비자 보호 및 소비생활의 향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며(안제23조~제30조)

일곱째, 본 조례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내용을 정하여 이행할 것을 권고 할수 있도록 하는 등 (안제31조~제34조)

소비자의 기본적인 권익보호를 위한 법적근거, 절차를 명확히하여 소비자보호 행정의 기반을 구축하고 공정한 거래풍토를 조성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시기적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됨.